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47

2023년 9월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각종 재난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재난수습 주무부서 정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지원관 역할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대리출석 의결권 부여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정의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으

로 불필요하여 삭제(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삭제)

(2) “재난수습 주무부서”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3)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4) 자치경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제4호)

(5)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출석, 대리출석한 위원에 의결권 부여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6)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총괄지원관” 임무 규정 신설(안 제14조제2항제3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 정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지원관을 두고 그 역할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대리출석 의결권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로는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정의를 상위법 정의로 대체하면서 삭제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는 한편,

②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소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자치경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규정, 공무원 위원의 대리출석 및 의결권 부여 규정을 신설하고,

③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총괄지원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	제2조(정의) ----------.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치구 나. 시의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삭 제>
11. · 12. (생 략)	10. · 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생략)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 맡고---------- ---------- 맡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사람이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방경찰청장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신 설>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 ---------- 재난관리책임기관---------- ----------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7. ----------

있는 기관 · 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8. ---------- 사람 중--------- 위촉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8호----------.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 ---------- 있으며, ---------- ---- 담당과장이 맡는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 · 운영) ① 본부장은 시장이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 · 운영) ① --------- 시장이 맡으며, ---------- ---.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 ---------- 총괄지원관, 통제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	2. ---------- 맡으며, 본부장

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 차장을 보좌하면서 ------- 업무 등을 -----.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 · 본부 · 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3.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 · 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신 설>	4.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 · 본부 · 국장이 맡으며, 본부장 · 차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6. ---------- ------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체 ---------- ----------.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 재정상 조치 요구	4. 재난관리책임기관----------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36조(재난 예보 · 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재난 예보 · 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 본부장, 자치구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재난관리책임기관----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8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삭 제>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55조(자원봉사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제9호--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재정지원) ① (생 략)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56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용어 정의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는 현행 제2조제9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10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나. 시의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	9.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삭 제>
11. · 12. (생 략)	10. · 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 먼저, “재난관리책임기관”(현행 제2조제9호), “재난관리주관기관”(현행 제2조제10호)의 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

---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2.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임.

○ 여기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이며(〔붙임 1〕 참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붙임 2〕 참조)

○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실질적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 본문에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의를 삭제하기보다는 상위법 정의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축약하여 명시적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조례 이해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표〕 참조).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나. 시의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	**9.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 13. (생 략)

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11.·12. (생 략)	<삭 제> 10.·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다음으로, 안 제2조제9호의 “재난수습 주무부서”는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로 정의하여 신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60개의 재난유형에 대해 수습 주무부서를 이미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붙임 3〕 참조).

○ ‘23.7월 수립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재난수습 주무부서는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장은 대책본부회의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대책본부 예하 13개의 실무반 중 상황총괄반[2]의 반장역할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담

2) 상황총괄반의 역할: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수습 총괄 등(실무반별 이행사항 확인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재난수습)

당하는 업무 비중이 높은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명확하여 부서 간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추가신설하려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 여겨짐.

[표] 대책본부 실무반 및 반장

연번	실 무 반	반 장
1	상황총괄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담당관,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장
2	생활지원반	복지정책과장
3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생활환경과장
4	통신지원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시설복구반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6	에너지복구반	녹색에너지과장
7	자원지원반	재난안전정책과장
8	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장
9	의료·방역반	보건의료정책과장
10	구조·구급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11	재난홍보반	언론담당관
12	질서·협력반	자치경찰총괄과장
13	행정지원·자원봉사반	자치행정과장

■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1) 소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 위원의 대리출석(안 제6조, 제9조)

○ 안 제6조제2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토록 규정하고 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생 략) <신 설>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며,

○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서울특별시 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0명 이내의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위기구임.

○ 따라서, 개정안은 소위원회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시간 신속하게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사료되며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9조제4항은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이 가능토록 하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 이는 상기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취지와 동일하게 업무 효율 제고가 목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본문 중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참석한 공무원에게 의결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을 고려할 때 임의의 “소속 공무원”보다는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실질적인 책임 및 결정권한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④ ----------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

2) 자치경찰위원장을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안 제7조)

○ 안 제7조제2항은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맡고---------- 맡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사람이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방경찰청장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신 설>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 ---------- 재난관리책임기관----------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7. ----------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8. ---------- 사람 중--------- 위촉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심의·의결,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경

찰청 지위·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심의·의결체계 상 합당한 조치라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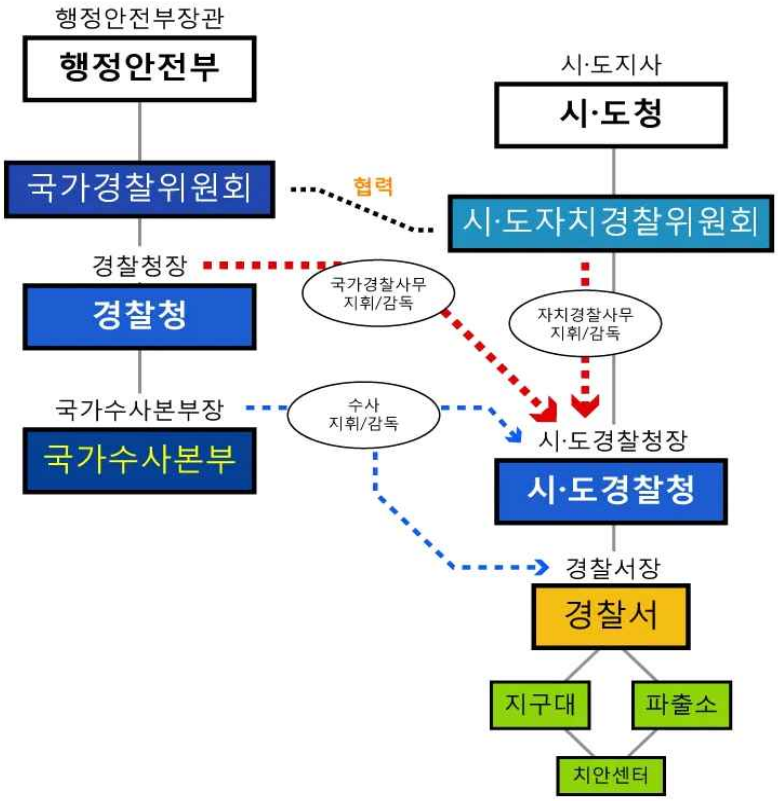

[그림]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 체계도

○ 또한, 동 개정안 제2항제3호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21.7.1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총괄지원관 신설에 대한 의견

○ 안 제14조제2항은 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지원관을 추가하면서 총

괄지원관의 역할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 · 운영) ① 본부장은 시장이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 · 운영) ① ---------- 시장이 맡으며, ----------.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 총괄지원관, 통제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2. ---------- 맡으며, 본부장 · 차장을 보좌하면서 ------- 업무 등을 -----.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 · 본부 · 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3.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 · 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신 설>	4.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 · 본부 · 국장이 맡으며, 본부장 · 차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6. ----------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체 ----------.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지침(‘23.7.)에 따른 대책본부 조직도(〔그림〕 참조)를 살펴보면, 대책본부의 ‘본부

장’은 시장, ‘차장’은 소관 행정부시장, 그리고 그 예하에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간 대책본부 조직도 상 재난안전관리실장(舊 안전총괄실장)이 ‘총괄지원관’으로 재난수습 총괄지원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것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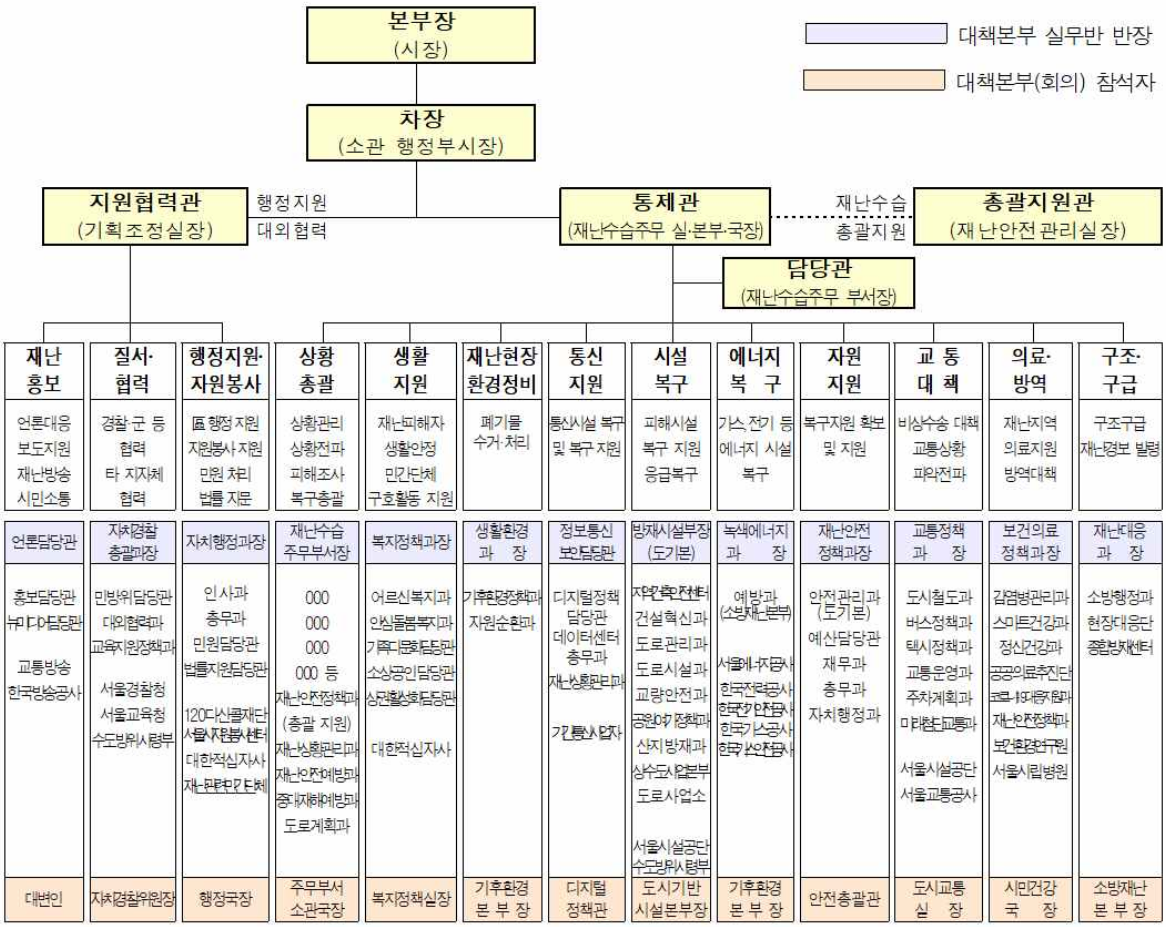

[그림]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동 개정안은 앞서 기술한 주요골자 외에 안 제7조제2항에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 안 제15조제4호와 제36조제4호에만 사용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명칭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 또한, 안 제36조제4항과 현행 제38조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38조는 삭제하고 그 밖에 의미 명확화와 용어 순화를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47

제 안 일 자 : 2023년 9월 11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 관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정의를 삭제하기보다는 조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위법 정의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축약하여 명시적으로 존치시키며,

○ 안 제9조 관련하여 대리참석 가능한 공무원을 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책임 및 결정권한을 가진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등 의미 명확화 및 실정 반영을 위해 수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상위법 정의를 인용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나. 대리참석 가능한 공무원을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9조제4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안 제7조제2항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안 제9조제4항 중 “소속 공무원”을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로 한다.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나. 시의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	**9.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삭 제>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1.·12. (생 략)	10.·11.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11. (개정안 제9호와 같음) 12.·13. (개정안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생 략) <신 설>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 맡고-- ---------- 맡는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사람이 --.	② (개정안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설>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 ---------- ---- 재난관리책임기관 ---------- ---------- ---------- ---------- **자**	6. ---------- ---------- ---------- ---------- ---------- ---------- **사람**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7. ---------- 사람	7. (개정안과 같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8. ---------- 사람 중---------- 위촉하는 사람	8.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8호----------.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	④ ----------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

	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 ----------.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생략)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 ----------- 있으며, ---------- 담당과장이 맡는다.	⑤ (개정안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⑥ ~ ⑨ (개정안과 같음)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시장이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 시장이 맡으며, ----------.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 - 통제관, 총괄지원관,----------.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2. ---------- ------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 - 업무 등을 -----.	2. (개정안과 같음)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3.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신 설>	4.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개정안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6. ---------- --------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체 ----------.	6. ---------- ------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4. 재난관리책임기관----------	4. (개정안과 같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5. ~ 9. (개정안과 같음)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생략)	발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발령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본부장, 자치구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본부장----------.	④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제38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삭 제>	제38조 (개정안과 같음)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 ----------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5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5조(자원봉사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제9호--------- ---------- ---------- ---------- ------.	제55조(자원봉사자) ① (개정안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56조(재정지원) ① (생략)	제56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56조(재정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사람-----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7조제1항 중 “되고”를 “맡고”로, “된다”를 “맡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7조제2항제7호”를 “제7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2조제5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담당과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이되고, 본부장은”을 “시장이 맡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제관”을 “통제관, 총괄지원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되며”를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로, “업무를”을 “업무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시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시의”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제9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	<삭 제>
나. 시의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관	<삭 제>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 설>	1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12. (생 략)	12.·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생 략)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맡고---------- 맡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사람이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방경찰청장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신 설>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 ---------- 재난관리책임기관---------- -- 사람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7. ----------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사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8. ---------- ----- 사람 중--------- 위촉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8호---------- ---------- -------. ---------- ---------- ---------- ---------- ---------- ---------- ---------- ---------- ---------- ---------- ---------- --.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⑤ ----------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 있으며, ---------- 담당과장이 맡는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시장이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 시장이 맡으며 ---------- ----------.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 ---------- 통제관, 총괄지원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2. ----------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 - 업무 등을 -----.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본부·국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신 설>	4.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맡으며, 본부장·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4.·5. (생 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4. 재난관리책임기관----------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 본부장, 자치구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재난관리책임기관---------- 본부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8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	

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5조(자원봉사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의2제9호----------. ②·③ (현행과 같음)